

이재명정부는 늘어가는 불평등, 빈곤문제 방치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라

- | | |
|------------|--|
| 1)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지금 즉시 이행이 필요하다 |
| 2) 기준중위소득 | 6년간의 중위소득 격차 해소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
| 3) 의료급여 |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보편적 의료보장과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다 |
| 4) 주거급여 | 현금지원을 넘어 실제 주거권 보장으로 주거급여 확대하라 |
| 5) 중생보위공개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민주적 질서 확립하라 |

20260629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순자산이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60억을 넘는 초부유층이 금융시장의 활황에 따라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의 초부유층은 1년 사이 36% 이상 급증해 가장 빠르게 초부유층이 늘어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표가 보편적인 삶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년실업률은 팬데믹 수준인 7% 이상으로 치솟았고, 저소득 가구의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는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는 '전 국민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복지기준에 반영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으나 통계상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계획을 통해 당시 총 12%가량이던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80여개 복지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이토록 낮은 것은 전 국민 복지 기준선을 침몰시키는 일이자, 정부와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지 내년이면 10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잔존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족관계를 낱알이 밝혀야 하는 수치가 복지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9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이대로는 못 참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빈곤층의 삶을 반영한 의료급여를 만듭시다.

올해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재정론을 앞세우며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던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고, 가난해도 누구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급여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급여,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치료를 포기하는 부정의를 끝냅시다.

-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로 주거급여를 실질화합시다.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사람에 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남아있습니다. 관리비 등 주거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월세 역할을 하는 항목을 주거급여로 포함시켜 수급자의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단지 월세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상담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7월 24일, <민생보위>를 열겠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열리는 회의에 어떤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수급자 한명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차가 어떻게 가난한 시민을 대변합니까. 우리는 다음 요구안을 전달하는 한편, 7월 24일 <민생보위>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알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알리는 이 자리에 중생보위 위원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꼭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 민생보위>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24일 오전10시 30분

- 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 문의: antipovertykr@gmail.com 010-8166-0811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내년이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 10년. 부양의무자기준 아직도 잔존 중
- 33만명으로 추산(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비수급)되는 핵심 사각지대는 지금 당장 포괄 가능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선언. 보건복지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음.

- 현재 급여별 부양의무자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급여	상황	비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구의 연소득이 1억 3천, 재산이 12억 이상 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가 고자산, 고소득자라 할 지라도 부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잔존
의료급여	잔존 (2024년부터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와 같은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 가장 심각
주거급여	2018년 완전폐지	-
교육급여	2015년 완전 폐지	-

- 2026년 5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1,922,765명, 의료급여는 1,591,361명.¹⁾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경제적 사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구는 최소 33만 명임.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빈곤층은 66만 명²⁾.

- 주지하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에서마저 배제된 이들의 실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함. 특히 의료급여로부터 밀려난 경우 병원 이용을 포기하게 됨. 사각지대 국민들이 빼앗기는 권리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잔존은 심각한 문제.

- 2021년~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2만

1) www.bokjiro.go.kr

2)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p10

4157명이었음. 탈락자 월 평균 소득은 44만3420원에 불과함³⁾. 이들을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재임.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권고⁴⁾).

- 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실패하였는가? 재정 절감 압박이 가장 큰 이유. 이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에 빈곤층이 없었기 때문임. 빈곤층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빈곤이 심화되고, 나아가 그 가족까지 빈곤에 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이름 뒤에서 9년이 지나도록 폐지를 완수하지 않고 있음. 내년이면 약속 10년이 되는 해임. 10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

3)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분석자료

4) <UN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7

2.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 지난 6년간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좁히겠다고 했으나 격차는 오히려 확대
- 추가 증가율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추고, 고무줄 산식을 반복한 결과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던 정책 취지 소멸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격차 해소 실패를 해명하고 위법한 현재 상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법제6조의2)하여 결정함. 이렇게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정해진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법제2조7)에 부합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실제 중위소득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음. 2025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2만 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 값은 290.9만 원,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중위 값은 332.9만 원임.
 - 더욱 문제인 것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실제 중위소득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임. 당시 약 12%로 추정했던 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6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나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1% 이상으로 오히려 확대되었음.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비교(2018~2025년)

(단위: 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67.2	170.7	175.7	182.8	194.5	207.8	222.8	239.2
	4인가구	451.9	461.4	474.9	487.6	512.1	540.1	573.0	609.8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187.8	196.2	204.2	214.8	229.2	253.5	276.6	290.9
	4인가구	478.6	500.0	520.4	547.5	584.1	646.2	705.1	741.7
소득분배지표	1인가구	230.2	239.4	247.3	251.5	267.2	292.3	320.9	332.9
	4인가구	460.3	478.8	494.5	503.0	534.3	584.7	641.8	665.8

주: 전년도 소득기준임

- 이는 몇 가지 구조적 원인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맛에 맞춰 매년 고무줄 산식을 반복한 결과임. 2020년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에 **격차 해소를 위한 증가율(추가 증가율)**을 더해 이듬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중생보위는 스스로 만든 이 원칙을 단 한 차례이행 했을 뿐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실제 증가율과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비교

연도	가금복 3년 평균 실제 증가율	적용증가율			
		기본증가율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	총 증가율
		기본증가율	근거		
2021	4.62	1.0	-	1.66	2.68
2022	4.32	3.02	3년 평균 증가율의 70%	1.94	5.02
2023	3.57	3.57	3년 평균 증가율	1.83	5.47
2024	4.34	3.47	3년 평균 증가율의 80%	2.53	6.09
2025	6.29	2.77	물가상승률 3년 평균	3.55	6.42
2026	9.19	2.0	물가상승률 3년 평균	4.42	6.51

- 이런 고무줄 산식의 첫 번째 피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임. 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준 매달 17만 2천원.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격차로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이

(단위: 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준중위소득(A)	1인가구	50.2	51.2	52.7	54.8	58.3	62.3	71.3
	4인가구	135.6	138.4	142.5	146.3	153.6	162.0	183.4
가계금융복지조사(B)	1인가구	56.3	58.9	61.3	64.4	68.8	76.0	88.5
	4인가구	143.6	150.0	156.1	164.2	175.2	193.8	225.6
생계급여 차이(A-B)	1인가구	-6.2	-7.6	-8.5	-9.6	-10.4	-13.7	-17.2
	4인가구	-8.0	-11.6	-13.7	-18.0	-21.6	-31.8	-42.3

-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수급비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8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됨. 현실과 다르게 과소결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 자체가 하향했으며,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역시 약 81만가구 일 것으로 추정함.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격차로 발생하는 생계급여 비수급빈곤층 규모

(단위: 가구)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885,429	555,305	249,720	41,798	21,994	12,813	1,841	1,959
가계금융복지조사(B)	1,704,027	1,080,891	460,817	91,019	46,500	19,922	2,348	2,531
비수급빈곤층 규모(A-B)	-818,598	-525,586	-211,096	-49,222	-24,506	-7,109	-507	-572

주: 소득인정액이 아닌 소득만을 기준으로 추정

- 소득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의 도입은 빈곤정책에 전 국민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5) 먼저, 12%의 격차를 연도별로 약 2%씩 추가해 해소한다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 더불어 이렇게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인상률을 더하는 방식이라, 이전의 잘못된 결과가 반복해서 누적될 수 밖에 없음.

반영하고, 예산에 따른 임의의 빈곤층 복지제도 축소를 막고자 함이었음.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소득수준을 무시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인해 제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32% 이하 비수급빈곤층은 약 8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 기준중위소득이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아니라 80여개 다양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훨씬 클 것임.

-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분명히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을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개선 대책을 밝혀야 함.

3. 의료급여 개선과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사보험 부담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수급권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해야
-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좋은 공공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더 나은 의료급여의 미래를 열어갈 때

-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병원을 이용한다며 비용 부담을 늘리거나 외래 방문 일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해왔음. 그러나 수급자들의 현실은 정반대임. 의료급여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의 미충족 의료욕구는 27.8%에 달하고, 치료포기 사유가 진료비 부담인 경우는 87.1%(김태완 외, 2023)⁶⁾.

- 의료급여의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음.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이 아니라 재정 절감에 목표를 둔 계획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험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이에 다음과 같은 의료급여 요구안을 제출함. 자세한 내용은 후면에 별첨함.

1)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가 시급함. 더불어 인구의 3%에도 달하지 못하는 낮은 수급률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의미. 이를 포괄하기 위한 선정기준 현실화가 필요함.
- 약간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면 가족이나 본인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생계활동을 포기하는 수급자들의 상황은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함정’임. 2015년 폐지한 이행급여 재도입으로 수급탈락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②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비롯한 비수급빈곤층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 현실화

③ 이행급여 재도입

6)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23)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다른 가구에 비해 낮으나 치료포기 경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제외한 다른 저소득 가구보다 높고, 그 이유가 진료비 부담인 경우도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높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황이 다른 가구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치료 부담이 적으나 꼭 필요한 치료가 있을 때조차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수급자들의 비용의식을 강화한다는 허울아래 도입된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들의 급여 일수 관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질병과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 범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함.
- 일단 치료비를 낸 뒤 연말에 정산 받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상한선 이후에는 납부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퇴원 후 발생하는 장기입원 공제 때문에 생계급여가 삭감 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현재 장기입원공제는 1인 가구 기준 369.469원으로 급여의 45%에 달함.
- 대부분 비급여 진료로 이뤄져있어 치료가 어려운 치과진료의 보장성을 확대해 ‘치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 ① 본인부담금, 선택병의원제도 폐지 및 지원강화
- ②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이 아니라 자동 납부 면제로 변경
- ③ 퇴원 후 장기입원 공제 금지
- ④ 치과 보장성 강화

3)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사보험 부담없는 안심 의료급여를 위한 공공병원 시범사업

- 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비급여, 보호자(간병인)을 요구하는 병원 앞에서 증폭함. 이 때문에 부족한 수급비를 아껴 사보험마저 가입하는 모습은 실패한 공공의료 현실의 단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두가지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함.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사보험 부담없는 안심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는 손실 부담없이 치료를 선택하고, 환자는 비용부담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4.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즉시 상향 및 60%까지 단계적 상향 계획 발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완화 (동일 시·군 내에서 분리 독립하는 청년 가구원도 보장)
- 관리비·공과금을 주거급여 인정비용 범주에 포함해 수급자의 매월 실제 부담을 지급해야 함

-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 함께 제정된 주거급여는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의 성격과 효과로는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 수당’과 같은 성격을 가짐.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 아래 주거급여는 수당으로서의 수급자 숫자가 적고, 공공부조로서는 급여 안정성과 수준이 부족한 문제를 갖고 있음.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 장치로 작동할 뿐,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우리는 주거급여가 실제 수급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변화를 요구함.

1) 주거급여 보장범위의 확대로 사각지대 문제 개선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도 이후 기준중위소득의 48%에 머물러 있음. 정부는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선정기준은 3년째 제자리. 그 사이에 월세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해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이 극심해 진 실정임.
- 주거급여 1급지인 서울시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0평(33㎡)이하인 비아파트 소규모 주택들의 2025년 평균 월세는 약 69.8만원으로,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 2인가구 소득의 34.7%, 3인 가구 소득의 27%에 달함. 일반적으로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차지하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평가하는데,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급등한 주거비 현실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함.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상향하는 안을 즉시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선정기준의 확대와 더불어 현재의 까다로운 지급 기준의 완화도 필요함. 예를 들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원가족이 수급가구일 경우, 해당 가구에 서 독립할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 가구의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동일 시·군 내에서 분리 독립하는 수급가구 청년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수급가구 청년의 노동, 자립,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원가족이 수급가구라면 동일 시·군 내에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 지급을 보장받도록 분리지급 인정요건 완화가 필요함. 나아가 현행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 상태의 독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실제 생계와 주거 실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① 주거급여 인정 비용 범주의 현실을 반영한 확대 (실제 임차료에 관리비 등 포함)

- 현재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비, 광열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20가구 중 주거급여로 임대료·관리비·광열비를 모두 충당하는 가구는 1가구 뿐이었음. 월평균 관리비와 수도광열비를 합하면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가 넘는 가구는 8가구.
- 특히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자의 경우 월세는 낮아지지만 관리비가 인상되는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생활상의 저하를 겪게 됨. 이는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지인 만남과 같은 외부활동을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는데, 더 극심한 경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에 놓임.
-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통해 주거급여 한도액을 실시하고 있음. 한도액 내에서 고정적인 관리비와 수도광열비 등의 비용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주거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현재 국토위원회는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법 개정없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먼저 결정·이행하기를 촉구함.

② 안정적인 주거지로의 이전 지원을 주거급여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보해야

- 폭발적으로 오르는 민간임대차시장의 임대료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적절한 주거지를 보장하는 것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줌. 조사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경우는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25.26%와 27.05%였으나,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이 비율은 42.26%(2015년)으로 증가함.

<주거급여 수급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단위: %)

구분	전체 수급자		공공임대 제외(민간임대) 거주수급자
	2015년	2019년*	2015년
전체	19.33	-	28.71
1급지	25.26	27.05	42.26
2급지	21.90	26.24	33.53
3급지	16.38	20.77	26.39
4급지	16.47	25.93	21.63

출처: 1) 『주거급여 개편 제도의 평가 체계 구축 및 효과 분석 연구』 244~245쪽, 국토교통부, 2015.

2) 2019년, LH 내부자료를 인용한 통계, 김성연(2020), 114쪽 참고.

- 현재 주거급여 체계 내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수해위험 (반) 지하나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적정 거처에 살고 있어도,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어도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 ‘갈 곳이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음.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엔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조사에 머무를 뿐 주거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가진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비정적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이주 안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행 주택조사는 실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과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넘어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권리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 경로를 만들어가야 함. 이를 통해 ①주거빈곤층의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②주택 상향이동을 상담·지원하고 ③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필요조건을 조사 ④공공주택과 주택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주거안정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선순환이 될 것.
- 유념할 것은 단지 주택의 열악함만을 들어 주택 개선, 이주를 주거 상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열악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생활해왔거나 이웃·동료·지지 관계가 있는 경우 이주 결정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③ 수선유지급여, 기간과 금액 한도가 아니라 실제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 현행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음. 현행 지원 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에 맞춰 일부만 보수하고, 몇 년이 지나면 보수한 부분마저 노후화해 절대적 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됨.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도서지역 10% 가산)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능·설비(창호, 난방공사, 단열 등)	구조,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노후도 점수에 따른 금액과 기간 제한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가구마다 계획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침수 방지 시설, 단열·창호 개선(그린 리모델링) 등 기후위기 대응 항목을 필수 수선 범위에 포함해야 함.

④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지역 세분화

- 현재 ‘기준 임대료’는 실제 시장의 전·월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도시 및 수도권에 임대료 상승폭에 비해 급여액 인상률이 매년 턱없이 낮아 상대적 수준 또한 하락 중.
- 최근 월세가 급등하는 추세에 발맞춰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함. 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4개 급지 구분(현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을 현실화하여, 임대료가 높은 대도시에서도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실제 지역별 전·월세 시세와 연동하여 실효성 있게 인상해야 함. 또 현재 4개 급지로 분류된 지역 구분을 주거비 수준이 급등한 특정 거점 도시를 반영해 세분화해야 함.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밀실회의
 - 방청권 보장, 속기록 작성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음. 중생보위는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을 모두 최종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으며, 속기록은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음.
- 이는 국가의 주요 회의와 비교할 때 무척 폐쇄적이고 이례적인 수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3개 회의는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의무가 있음.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등 23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 이와 비교할 때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모든 결정과정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폐쇄적 운영 덕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 한 번도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지킨 적이 없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지금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비)민주적 절차’로 전락해버렸음.
- 민주적 거버넌스는 민주적 정부 운영의 필수 요소임. 모든 정부 위원회 가운데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첫 정부가 되길 바람.
- 이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자료와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고, 각 부처는 의견과 함께 근거를 제시해야 함. 방청권을 보장하고, 속기록을 남기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할 것을 요구함.